



중국 탄소시장 활성화 정책

++++
++++
++++

탄소배출 억제정책 활발하게 추진 중

중국은 세계 주요 탄소배출국으로서 최근 에너지난이 지속되자 2010년부터 본격적인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2009년 코펜하겐 회의를 전후로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GDP 단위기준 당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환경보호 관련 전문 행정관리부서를 설립해 행정수단, 즉 '명령과 통제'의 방식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오염물 배출 감소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에 상응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기업별 상이한 경영환경과 이행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통일적인 표준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 적극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점과 기업 차원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최종 행정표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에만 차중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신규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탄력적인 시장체제'를 통해 기업의 생산 경영활동의 부산물인 환경오염을 줄이기로 했다. 즉 기업별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대해 일정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원가를 높이고 능동적으로 오염물 배출 감소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시장체제를 통해 오염물 배출감소를 달성하는 방식은 탄소세 도입과 탄소배출권 거래 등 2가지가 포함된다. 이는 모두 정부정책과 시장체제의 혼합체로 그중 탄소세는 가격간섭수단, 탄소배출권 거래는 수량간섭수단으로 분류된다.

탄소세 도입

탄소세는 화석연료소모와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산화탄소함량의 비례에 따라 석탄, 천연가스, 완성유 등 화석연료제품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중국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재정부, 환경보호부 등 관련부처들의 탄소세 도입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을 전후로 탄소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010년 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이미 '중국탄소세세제설계안(中國炭素稅制設計案)' 초안을 언론에 발표한 상태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0위안을 부과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40위안/톤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출한 반면 환경부는 2012년부터 톤당 20위안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50위안/톤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각 중앙부처별로 탄소세 세율에 대한 방안이 달라 최종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탄소세 부담 주체에는 모든 기업과 사업단위가 포함되나 개인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 국유기업, 집체기업, 민간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 각 유형의 기업과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 등이 탄소세 부과 대상이 된다.

베이징 서부교외 화력발전소 매연 방출 모습



출처: 시대주간신문사(時代周報)

징수한 탄소세의 귀속과 관련 발개위와 재정부 관세자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에 7대3의 비율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탄소세는 국가 거시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국제협조와도 연관이 있어 지방세로 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100% 중앙세로 할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극성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 위주로 하되 지방에도 일정 부분 배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발개위와 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국제경험과 중국 실정을 결합해 탄소세징수 관련 혜택정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즉, 정책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 에너지집약형 산업을 대상으로 세수감면 또는 반환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에너지집약형 산업이 세수혜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정부지원에서 일정표준의 이산화탄소 방출감소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 등 관련 협의서를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거나 화수해 일정표준에 도달한 기업에 한해서는 탄소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배출권 거래는 정부에서 전 사회적인 탄소배출 총량을 제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정책이나 계획안이 명확하지 못하고 법률체계도 성숙되지 못해 현재까지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파동적인 참여자에 불과한 상황이다.

관련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관련 법률정책 체계를 설립하는 것이다.

2009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에전화(謝振華) 부주임이 특정 지역 및 업종 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 실시하도록 발표한 후 2008년 베이징 환경교역(거래)소, 상하이 환경에너지거래소, 텐진 배출권거래소, 2009년 우한, 항저우, 쿤밍, 충칭 등에 거래소가 설립되고 2010년 5월 산시(陝西)에 서부지역의 최초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기구(排放權儲備中心)가 설립되는 등 중국내 탄소배출거래소 설립은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 거래소는 대부분 기업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CDM 거래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 탄소시장의 전망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탄소세 도입,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탄소배출 억제정책으로 삼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탄소세 징수에 비해 탄소배출총량 통제에는 더욱 효과적이지만 쿼터제도, 거래체계, 거래시스템, 결산제도, 시장감독관리체계 등 관련 체제설립도 준비해야 해 가까운 시일 내에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탄소세 도입은 중국정부가 세수수입으로 국민소득 배분을 조정해 국내소비를 증진하려는 취지에 적합하며 저탄소 기술개발에 치중해 고에너지·고오염 산업구조조정 실현에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 내 탄소세를 징수함에 따라 선진국의 중국에 대한 탄소세 징수를 피할 수 있어 무역마찰 시 중국이 파동적인 처지에 빠져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탄소세 징수는 기업의 경영원가를 높여 에너지 절감 품목의 개발, 에너지절감형 마케팅 전략 강구 등 적극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분야에서는 향후 5년 내 VER(Voluntary Emission Reduction-자발적인 탄소배출감소)형태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의 VER시장은 대부분 녹화조림, 폐기물처리, 농업지원 등 공익성 프로젝트며 CDM에 비해 신사비준 절차도 간편해 전 반적인 프로젝트 수행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K]